

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14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'세계적인 미식도시 서울' 인지도 강화 및 고품격 K-푸드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024년 국제 미식행사를 유치하고자 함

나.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3 단서에 의거, 2024년 미식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※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긴급한 사무의 경우,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협약 체결 및 “의회의 의결 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” 단서 조항 추가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행사명 : 비공개

※ 협약 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개최지 확정 발표 전까지(10~11월 중)

○ 주최/개최도시 : ***** / 서울특별시

○ 행사기간 : 2024년 3월 중/ 3~4일간 ※ 개최일자 변동 가능

- 장 소 : 서울 주요 관광명소, 특급 호텔 중 선정 예정
- 행사규모 : 최대 800명 참석
- 주요내용 : 시상식&리셉션, 환영만찬, 간담회 등

나. 추진경과

- '23. 6~7월 : 서울시-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유치 실무 협의
- '23. 8월 : 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장, 문체위원장 사전 보고
- '23. 9월 : 2024 미식행사 대한민국(서울) 개최를 위한
주최사-서울시-한식진흥원 3자간 협약 체결

다. 업무협약 주요내용

- 협약서명 : 2024 국제 미식행사 개최 협약
- 협약주체 : (주최사) ***** / (개최도시) 서울특별시, 한식진흥원*
 - ※ 한식진흥원 :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
- 협약목적
 - 2024 국제 미식행사 대한민국(서울) 개최 협력 및 행사와 연계한 한식, 서울미식 등 개최지 홍보
- 주요내용
 - (주최기관의 역할과 책임)
 - 행사의 “주최기관”으로서 행사 내용, 초청 및 브랜딩 주도, 전체 과정에서 ‘개최국’의 의견과 지원을 구함
 - ※ 공식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모든 비용은 주최기관에서 부담
 - (개최도시의 역할과 책임)
 - 한국 개최 행사의 “개최도시”로서 진행상황을 주최기관과 정기적인 공유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위한 협력
 - ※ 주최기관에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, 개최국 별도의 부대행사 기획·운영 비용 부담

라. 기대효과

- 국제 미식행사 유치를 통해 '세계적인 미식 관광지 서울' 인지도 제고 및 K-푸드의 고부가 관광자원화에 기여
 - 전 세계 미식 관련 전문가, 미디어,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국제 미식 행사 개최지 홍보 및 식재료·요리법·음식문화 등 소개

마. 소요사업비

- 소요 사업비 : 500백만원(총 1,000백만원, 국비, 시비 5:5 분담)
 - 소요내역 : 국제 미식행사 유치 라이선스 수수료, 부대행사 운영비 및 일반 수용비 등

바. 향후일정

- '23.10~11월 중 : 개최도시 공개
- ~ '23. 12월 : 공식행사 장소 및 부대행사 프로그램 확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식진흥법, 관광진흥법, 지방자치법

- 행사의 개최

〈 한식진흥법 〉

제8조(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한식 인력·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
2. 전시회·학술대회의 개최
3.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
4.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< 관광진흥법 >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○ **업무협약의 체결**

< 지방자치법 >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 편성 반영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업무협약서(안) 1부(별도송부).

※ 작성자 : 관광산업과 관광산업정책팀 김소연 (☎2133-2773)